
집진기 (대기오염방지시설)

물품 규격서

2026. 08

(주)아즈텍더블유비이

제 1 장 구매 설명서

1. 사 업 명 : 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- 집진기 (대기오염방지시설)

2. 위 치 :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99 (신평동)

3. 사업목적

2026년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에너지 감축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와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온실가스 문제 대두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함으로써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하고자 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.

4. 사업개요

집진기 (대기오염방지시설) 구매 · 설치 1식(단, 해당 규격서는 물품만을 대상으로 함)

5. 구매 설치

본 일반사항 및 규격서에 의하여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.

6. 계약기간 : 계약일 ~ 2026년 11월 30일

제 2 장 일 반 사 항

1. 목 적

본 규격서는 집진기 (대기오염방지시설) 구매 및 설치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에 적용한다.

2. 일반사항

본 규격서는 “2026년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”에 적용되는 집진기 (대기오염방지시설) 구매 및 설치 건에 적용한다.

가. 본 사업은 (주)아즈텍더블유비이 내 집진기 (대기오염방지시설) 구매 및 설치 건으로서 설비의 납품, 설치, 시운전 결과보고 등 제반업무수행에 있어서 계약자는 본부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본 규격서와 관련규정, 안전관리수칙 등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.

나. 계약자는 본사업의 규격서를 충분히 사전검토, 숙지하고 타공정(배관, 검측설비 공사 등)과의 긴밀한 일정협의를 통하여 본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.

다. 계약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
라. 다음의 경우 감독원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.

- 1) 계약자가 정상적인 감독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응하지 않을 때
- 2)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
3. 사업범위

당사는 본 사업을 통하여 제작시방서 및 각 제출된 제안서에 따라 집진기 (대기오염방지시설) 구매, 설치, 시운전을 완료하여, 성과검증 및 성과보증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결과 도출.

4. 정의 및 약어

가. 사업주

별도의 기술이 없다면 (주)아즈텍더블유비이를 의미한다.

나. 계약자

계약에 의해 필요한 기술 지원을 포함하여 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체를 뜻한다.

다. 감독원

본 계약의 사업주가 임명한 사업주의 직원 또는 단체(회사)를 의미한다.

라. 사업수행

집진기 (대기오염방지시설) 구매 및 설치를 위한 장비, 인력을 포함해서 계약에 따라 수행될 모든 업무를 말한다.

마. 현장

(주)아즈텍더블유비이

바. 약어

미터법이나 단어의 약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일반적 관행에 따른다.

5. 교 육

가. 계약자는 공급하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나. 교육내용

- 집진기 (대기오염방지시설)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
- 집진기 (대기오염방지시설) 교체주기 및 교체방법
- 부대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
- 기타 필요한 사항

6. 검사검수 및 하자보증

가. 검사라 함은 계약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사항을 완료하여야 하며, 종합 시운전 완료 후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나. 최종 검사검수 완료후부터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고, 하자 발생 시에는 (주)아즈텍더블유비이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계약자 부담으로 하자 보수하여야 한다.

7. 감독 및 결과확인

가. 사업수행과정을 감독원은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, 이때 감독원의 시정 및 지시사항이 있을 때는 계약자는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.

나. 사업수행사항이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는 계약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한 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8. 안전관리 및 보안

가. 계약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약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,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칠 경우에는 계약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.

나. 계약자는 당해 시설 출입자에 대하여 반드시 감독원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하고,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.

9. 질의 및 이의

규격사양과 제품사양이 상이한 경우, 또는 이해 곤란한 내용 등 질의사항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 계약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문의하여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.

10. 기타사항

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수행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 할 사항은 감독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 책임 하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제 3 장 특 별 사 항

1. 집진기 (대기오염방지시설) 구매

본 특별사항은 당사에 납품될 집진기 (대기오염방지시설) 규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.

2. 사업범위

- 가. 집진기 (대기오염방지시설) 1식 구매
- 나. 납기: 계약일 ~ 2026년 11월 30일
- 다. 인도조건: (주)아즈텍더블유비이 현장설치도
- 라. 필수 사항 - 성과검증(제안서에 제출)
- 마. 필수 사항 - 성과보증(제안서에 제출)

3. 사업내용

- 가. 집진기 (대기오염방지시설)

품 명	수량	단위	세 부 규 격		비고
집진기	1	식	TYPE	와류믹스형 세정집진기	세부사항은 별도 협의 진행 예정
			규격	W2000 x L3000 x H6500	
			배기팬 용량	350m ³ /min x 350mmAq x 37kW	
			세정수 순환펌프 용량	1m ³ /min x 15mH x 5.5kW	

4. 시운전 및 검사

- 가. 입회시험은 반드시 상위의 표준에 의하여 실행되어야 하며, 납품 후 제품에 대한 검사 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할 것.
- 나. 집진기 (대기오염방지시설)는 검수 및 시운전 시 사양서에 명시된 성능 범위에 따라 처리풍량, 유입 및 유출 풍량, 집진효율, 압력손실, 세정성능 및 분진 제거성능, 와류 형성 및 세정 등 주요 처리공정의 정상 작동 여부, 송풍기·펌프 등 주요 구동장치의 운전 상태, 세정수 공급 및 순환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, 노즐 및 분사장치의 작동상태, 세정수 및 분진 배출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, 자동제어 및 계측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,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, 규정된 성능을 만족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또한 설계 처리풍량 및 운전조건에 따른 설비의 정상 운전과 안정적인 집진성능 및 세정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다. 집진기 (대기오염방지시설) 제작승인 도서 제출 시에는 장비의 주요 구성, 처리풍량 및 설계 풍량, 유입·유출 방식, 집진 및 세정 처리공정, 와류 형성 및 세정방식, 본체의 구조 및 재질, 세정수 공급·순환장치, 노즐 및 분사장치, 송풍기·펌프 등 구동장치, 배관 및 밸브, 분진 및 세정수 배출장치, 차압·풍량·수위 등 계측장치, 자동제어시스템, 전기 및 제어설비, 안전장치 등의 사양을 도서에 명기하여야 한다.

5. 성과검증

- 가. 성과검증에 관한 방법론 제시할 것.
- 나. 상기 내용을 입찰시 제안서에 표기할 것.

6. 성과보증

- 가. 성과검증에 따른 성과보증할 것
- 나. 성과보증에 관한 방법론 제시할 것.
- 다. 상기 내용을 입찰시 제안서에 표기할 것.

7. 기타

- 가. 집진기 (대기오염방지시설)는 국내외 제품을 제한하지 않으며, 부품 일부 중 저품질의 수입산은 지양하며, 완제품 형식의 설비이어야 함.